

## 1. 개정이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 및 사고예방 업무 수행을 위해 항공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사고조사관(전문임기제)으로 채용하나, 일부 분야의 자격기준이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비교시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응시 가능한 인력대상이 한정적인 면이 있어, 사고조사업무의 경쟁력 제고하고 우수 인재 확보하기 위해 사고조사관의 자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종(고정익)분야 사고조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2)

종전의 자격기준은 동일분야의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자격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나. 객실안전·인적요소분야 사고조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2)

사고조사분야를 사고조사 국제기준에 따른 명칭으로 수정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조사관 채용이 가능하도록 경력 인정범위도 확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훈령 제 호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제16조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분 야	등 급	자 격 기 준	
조종(고정익)	전문임기 가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 중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 1. 운송용 항공기(비행기) 3,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 (비행기) 비행시간이 5,000시간 이상(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전 비행시간을 포함한다) 2. 기장 근무경력
조종(회전익)	전문임기 가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후 회전익 항공기로 총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인 사람
정비 (기체·발동기)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 후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정비분야(기체· 발동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항공정비(기체·발동기)분야 사고조사 업무 수행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항공 정비(기체·발동기)분야 업무수행 경력
정비 (전자전기·계기)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 후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 대한 정비분야(전자 전기·계기)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항공정비(전자·전기·계기)분야 사고조사 업무 수행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항공 정비(전자·전기·계기)분야 업무수행 경력

##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분 야	등 급	자 격 기 준	
관제·기상·통신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후 관제 또는 기상 또는 통신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항공관제·기상·통신분야 사고조사 업무 수행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항공 관제·기상·통신분야 업무수행 경력
운항관리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 취득 후 운항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항공운항관리분야 사고조사 업무 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등에서 항공 운항관리분야 업무수행 경력
객실안전·인적요소 (HF)	전문임기 나급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객실안전·인적요소(Human Factor)분야 사고조사 업무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경력

##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분 야	등 급	자 격 기 준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체 등에서 객실승무원 업무 수행경력(객실사무장 근무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또는 인적요소(Human Factor) 업무수행경력(해당 분야의 교육·감사(Audit) 업무수행경력 포함)
비행기록장치	전문임기 나급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비행기록장치분야 사고조사 업무 수행 경력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항공운영기관, 국제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체 등에서 비행기록장치분야 업무 수행 경력
철도운전·관제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및 개별법령(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고속, 전기, 디젤) 또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철도운전·관제) 경력의 합이 3년(운전 및 관제경력 각각 최소 1년이상 포함) 이상인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철도운전·관제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 경력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철도운전·관제분야 업무수행 경력
철도차량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분 야	등 급	자 격 기 준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철도차량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 경력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철도차량분야 업무수행 경력
철도신호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신호기술사 또는 전기철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2. 철도신호기사 또는 전기철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철도신호·전기철도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 경력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철도신호·전기철도분야 업무수행 경력
철도안전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2.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1. 국가기관에서 철도안전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 경력

## 항공·철도사고조사관 자격기준

분 야	등 급	자 격 기 준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철도안전분야 업무수행 경력
철도토목	전문임기 나급	자격증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철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철도토목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비고	1. 국가기관에서 철도토목분야 사고조사업무수행 경력 또는 안전관리감독업무 수행 경력 2.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기관, 철도관련 연구기관·제작사 등에서 철도토목분야 업무수행 경력